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도로교통법 누진세적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 년 월 일

청 원 인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이현욱
건명	도로교통법 개정안 [법률 제13458호]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16년 2월 16일
<p>소개의견</p> <p>청원인 이현욱은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청소년의원입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2016년 2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였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 중 의결된 안건 하나가 『교통 범칙금 누진세 도입을 통한 범칙금 효과성 재고』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에 정액제를 실시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통범칙금에 누진세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리 부과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교통사고도 줄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의회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p> <p>.</p>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액제를 실시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교통 범칙금의 목적을 실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리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벌금도 마찬가지로이지만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은 단순히 그 사람이 교통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앞으로는 교통 법규를 준수하도록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동등 회생원칙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의 벌금이 같은 가치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을 인식하는 정도가 다를 것이고 그것은 곧 사람들마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과 조심성을 달리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고 또 그걸 떠나서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벌금 부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실질적 평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액제보다 훨씬 더 모든 국민을 법 앞에 평등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 주요골자: 도로교통법 제 13장 148조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벌칙은 소득수준에 따라 가중될 수 있다. 가중치는 각 호에 따라 정한다.

현행	개정문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u>이 벌칙은 소득수준에 따라 가중될 수 있다. 가중치는 각 호에 따라 정한다.</u> <u>1.소득 수준에 따라 5분위로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u>

율을 누진세율로 정한다.

2.기존의 정액세에 누진세율을 곱하여 교통 범칙금의 가중치를 계산한다.

3.기존의 정액세에 가중치를 더하여 범칙금을 정한다.

청원인 성명 :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원제출용지

- ①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 ② 「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의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성명 :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길동 (인) 외 24인(법인)

-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청원소개의견서

-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 ②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청원서

-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